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이학석사 학위논문

디지털증거 선별 절차의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

2021년 1월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수리정보학과 디지털포렌식학전공

박영민

디지털증거 선별 절차의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

지도교수 이 병 영

이 논문을 이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12월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수리정보과학과 디지털포렌식학 전공
박 영 민

박 영 민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1년 1월

위원장	안	정	호	(인)
부위원장	이	병	영	(인)
위원	김	판	기	(인)

국문초록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현대 문명에서 디지털기기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도구가 되었다. 모든 자료와 정보는 디지털기기에 의해 생산, 유통되고, 디지털정보의 저장, 분석을 통해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있다. 정보화시대를 거쳐 최근 4차 산업 혁명시대에 돌입하면서 사이버 세계에서 생산되는 정보의 양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공정위, 검찰, 경찰 및 국세청 등 법률에서 규제하는 행위에 대한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혀야하는 기관의 조사 방법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기업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등을 조사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이러한 변화를 더욱 급격하게 체감할 수 밖에 없다. 기업에서 생산되는 모든 정보는 디지털화된 전자정보이고, 기존의 서류문서나 업무일지 등은 사라진 지 오래되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는 디지털정보에 대한 조사 위주로 변화하게 되었다. 그러나 디지털정보에 대한 조사는 그 방법과 규모, 절차 등에 따라서 기업의 영업기밀, 개인의 프라이버시 등이 노출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상존한다.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디지털정보에 대한 조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 조직을 강화하는 등 유기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디지털증거는 디지털정보 중 증거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디지털증거를 수집부터 폐기까지의 사이클 중에서 위에서 기술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야하는 과정이 디지털증거의 선별절차이다. 또한 조사 대상 자료의 양과 범위가 늘어나는 추세를 볼 때 선별수집보다 포괄수집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포괄수집의 경우 부작용을 수반

할 가능성이 커지는 우려가 있다.

본 연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소관 법령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행해지는 포괄수집이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연구결과 포괄수집 과정에서 대면 선별 절차의 한계점과 피조사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사건과 무관한 기업의 영업비밀이나 피조사인의 소속 임직원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자료에 대한 처리 방안을 강화할 필요성, 포괄수집에 의해 확보한 디지털정보들 중에서 사건관련성이 있는 디지털증거만을 수집하기 위한 선별 시 주요 증거들이 사장될 수 있는 문제점을 인식하였다.

이러한 한계점, 필요성 및 문제점을 기초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디지털증거 수집 및 선별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원격 선별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여 피조사인의 참여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였고,

둘째, 포괄수집으로 인해 피조사인과 피조사인의 소속 임직원들의 법익을 해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접근제한권한을 피조사인에게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셋째, 디지털증거의 단계적 선별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디지털증거를 처리하는 과정 중 수집 및 선별 단계의 절차를 재정립하고, 그에 따라 피조사인의 참여권 보장방안을 제안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증거자료 관리의 내실을 강화할 수 있고, 피조사인은 증거자료 처리 과정의 참여 기회가 확대된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주제어: 디지털증거, 선별, 공정거래위원회,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디지털증거 선별, 증거조사, 포괄조사, 참여권

학번: 2019-28241

목 차

제1장 서론	1
제2장 디지털증거의 특성	4
제1절 디지털증거의 개념	4
제2절 디지털증거의 특성	5
1. 매체독립성	5
2. 비가시성 비가독성	6
3. 취약성	6
4. 대용량성	7
5. 전문성	8
6. 네트워크 관련성	8
제3절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8
1. 동일성	9
2. 무결성	10
3. 진정성	11
4. 신뢰성	12
제3장 공정거래위원회 사건 처리 개관	13
제1절 공정거래위원회의 연혁	13
제2절 공정거래위원회의 성격 및 권한	14
제3절 공정거래위원회 사건 처리 절차	16
1. 사건의 인지	17
2. 사전심사	18
3. 심사착수 후 조사 및 심사	19
4. 안건상정	19
5. 심의 준비	20

6. 위원회 심의 및 의결	21
7.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22
제4절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조사	22
제5절 공정거래위원회의 디지털포렌식	24
1. 디지털포렌식 관련 법제	24
2. 공정거래위원회의 디지털증거 수집 관련 규정	25
3. 선별수집	27
4. 포괄수집	28
5. 디지털증거 포괄수집의 중요성	29
제4장 디지털증거 포괄수집의 쟁점	31
제1절 디지털증거 수집에 대한 피조사인의 참여권 보장 문제	31
제2절 피조사인의 범의 침해 가능성	32
제3절 사건 관련성 판단상 쟁점	33
제5장 디지털 증거 선별 절차의 개선 방안	35
제1절 원격 선별프레임워크 도입	35
제2절 디지털정보 접근 제한권 부여	38
제3절 디지털증거 단계적 선별 방안	40
제6장 결론	42
참고문헌	44
Abstract	46

제1장 서론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현대 사회는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현대인은 스마트폰을 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모든 경제활동은 PC와 스마트기기 등 정보통신기기를 통해 이루어지며, 최근에는 인간의 사고에 근접한 인공지능이 개발되어 산업 현장에 적용을 검토하는 등 우리 생활 전반에 걸친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사회변화에 따라 기업의 업무환경도 변화하였다. 워드프로세서 기반의 전자문서가 수기 문서를 대신하였고, 업무 자료는 발송하는 즉시 수신자가 열람할 수 있는 이메일을 활용하며, 기업에서 생산되는 모든 정보는 데이터베이스로 저장하여 관리한다. 또한, 기업의 업무환경은 클라우드 기술로 인해 사무실 안팎의 경계가 모호해졌고, 원격 화상 회의 시스템으로 물리적 거리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기업의 환경변화는 기업의 행위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를 진행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조사에도 변화를 초래하였다. 문서창고에 쌓여있는 서류철을 위주로 확인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주요 관련자들의 컴퓨터에 저장된 문서 파일을 확인하고, 메일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의 의사연락에 대해 조사한다. 결국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는 기업이 생산한 디지털자료의 열람과 확인위주로 변모하게 되었고,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부터 디지털조사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였고, 모든 직원의 디지털조사 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디지털증거는 수집, 분석, 보관, 폐기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디지털증거의 수집 단계에서 분석 단계까지의 과정은 두 가지의 형태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현장조사를 진행하는 당시에 조사 대상의 기기 또는 매체에 저장된 디지털 자료를 열람하여 사건 관련성이 입증된

자료만 선별하여 수집하는 선별수집의 과정이다. 선별수집은 열람할 자료의 양이 적거나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확인해야하는 자료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좁을 경우에 주로 행해진다. 선별수집은 현장조사 시 피조사인의 소속 임직원의 입회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증거자료 수집 과정의 참여권이 자연스럽게 보장이 될 것이다. 두 번째는 사건 관련성이 있는 자료를 선별하기에는 시간의 제한, 조사 대상 기기의 처리속도 등 많은 제약이 있어 현장조사 기간 내 선별이 어려울 경우 조사 대상 기기 또는 매체의 일부 또는 전체를 증거로 수집하는 포괄수집의 과정이다. 포괄수집은 선별수집이 어려울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과정이지만, 앞서 기술한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기업이 생산하고 보유하고 있는 디지털자료의 양이 방대해짐에 따라 선별수집을 위한 대상이 늘어나게 되었고, 결국 선별수집의 제약으로 인해 포괄수집의 방법으로 디지털증거를 수집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다. 결국 선별수집은 ‘先선별 後수집’, 포괄수집은 ‘先수집 後선별’의 과정을 뜻한다.

포괄수집은 수집한 증거자료 일체에 대해 분석 절차를 거친다. 그리고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피조사업체의 관련자의 입회하에 디지털증거 선별을 수행하면서 사건관련성이 있는 자료는 보관하고 사건관련성이 없는 자료는 즉시 폐기한다. 그리고 보관된 자료를 통해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포괄수집 방법의 특성상 수집되는 디지털자료로 인해 기업의 영업기밀이 누설되거나 임직원의 프라이버시가 노출되는 등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존한다.

본 연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소관 법령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행해지는 포괄수집이 행위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연구결과 포괄수집 과정에서 대면 선별 절차의 한계점과 피조사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사건

과 무관한 기업의 영업비밀이나 피조사인의 소속 임직원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자료에 대한 처리 방안을 강화할 필요성, 포괄수집에 의해 확보한 디지털정보들 중에서 사건관련성이 있는 디지털증거만을 수집하기 위한 선별 시 주요 증거들이 사장될 수 있는 문제점을 인식하였다.

이러한 한계점, 필요성 및 문제점을 기초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디지털증거 수집 및 선별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원격 선별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여 피조사인의 참여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였고,

둘째, 포괄수집으로 인해 피조사인과 피조사인의 소속 임직원들의 법익을 해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접근제한권한을 피조사인에게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셋째, 디지털증거의 단계적 선별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디지털증거를 처리하는 과정 중 수집 및 선별 단계의 절차를 재정립하고, 피조사인의 참여권 보장방안을 제안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증거자료 관리의 내실을 강화할 수 있고, 피조사인은 증거자료 처리 과정의 참여 기회가 확대된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제2장 디지털증거의 특성

제1절 디지털증거의 개념

공정거래위원회는 디지털증거를 ‘디지털 자료 중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는 정보’¹⁾라고 정의하고, 디지털 자료란 ‘디지털 저장매체에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있거나 네트워크 및 유·무선 통신 등을 통해 전송 중인 정보’²⁾라고 정의한다. 또한 디지털증거에 관한 국제기구인 IOCE³⁾는 ‘법정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저장되거나 전송되는 이진수 형태의 정보’라고 정의하고, 디지털증거에 대한 과학실무그룹(SWGDE)⁴⁾은 ‘디지털 형태로 저장 또는 전송되는 증거가치 있는 정보’라고 정의하며, 대검찰청은 ‘범죄와 관련하여 디지털 형태로 저장되거나 전송되는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는 정보’⁵⁾라고 정의한다. 위에서 열거한 디지털증거의 다양한 정의에서 볼 수 있듯이 디지털증거는 그 형식

-
- 1)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8-4호, 2018. 4. 3. 시행)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디지털 증거"란 디지털 자료 중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는 정보를 말한다.
 - 2)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8-4호, 2018. 4. 3. 시행)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디지털 자료"란 디지털 저장매체에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있거나 네트워크 및 유·무선 통신 등을 통해 전송 중인 정보를 말한다.
 - 3) International Organisation on Computer Evidence: 미국, 호주, 홍콩, 영국 등 각국의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디지털증거에 관한 국제기구.
 - 4) Scientific Working Group on Digital Evidence: 미국 법무부의 마약수사청, 연방수사 관세청 및 국제청등의 증거분석 연구소를 중심으로 구성된 디지털증거에 관한 과학실무그룹.
 - 5)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대검찰청 예규 제991호, 2019. 5. 20 시행)
제3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 증거"란 범죄와 관련하여 디지털 형태로 저장되거나 전송되는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는 정보를 말한다.

이 ‘전자적’ 또는 ‘디지털’이라고 표현된다. ‘전자적’이라는 용어는 전자의 성질을 이용하여 표현하는 방법으로 전기적인 신호를 이용하여 0과 1을 표시하게 되는 방법이고, 2진수로 표현할 수 있는 데이터라고 볼 수 있다. ‘디지털’이라는 용어는 ‘아날로그’의 반대의미로 정보를 0과 1로 분절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을 말한다. 결국 디지털증거의 표현 방법은 2진수 형태로 표현된 정보를 의미한다. 그리고 디지털증거는 각종 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거나, 전송 중인 정보를 의미한다. 디지털증거는 유체물이 아닌 2진형태의 특수한 형태를 가진 정보의 집합이기 때문에 디지털증거만의 특징이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제2절 디지털증거의 특성

디지털증거는 사이버 세계에서 생산, 유통, 폐기되는 디지털정보의 일부로서, 기존의 유체물 증거와는 많은 차이점이 있다. 디지털증거는 매체독립성, 비가시성 및 비가독성, 취약성, 대용량성, 전문성, 네트워크 관련성 등의 특성을 가진다.⁶⁾

1. 매체독립성

매체독립성이란 디지털정보가 저장되는 매체에 종속되지 않고, 이 종간의 매체로 이동, 복사가 용이하다는 특성을 일컫는다. 일상적으로 우리가 디지털정보를 저장하는데 이용하는 매체로는 하드디스크, USB(Universal Serial Bus), SSD(Solid State Drive), CD, DVD, 기업 등 대규모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환경에서 데이터 백업용으로

6) 노명선 외 디지털포렌식 개론(제5판). 고시계사, 2017, 전자적 증거의 특성을 매체 독립성, 비가시성·비가독성, 변경·삭제 용이성(취약성), 대용량성, 전문성, 네트워크 관련성으로 구분하여 기술하고 있다.

활용하는 자기테이프 등이 있다. 디지털정보는 이렇게 다양한 저장 매체 사이를 옮겨 다닐 수 있고, 다른 저장매체로 이동 또는 복사할 때 그 내용이 변하지 않는다. 디지털증거는 이러한 디지털정보의 매체독립성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원본과 사본의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그러나 종이로 인쇄된 서류, 다이어리의 필기 등 전통적인 증거는 매체종속적인 특성이 있어, 원본과 사본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으나, 디지털증거는 가장 먼저 만들어진 디지털정보와 그 정보가 이동, 복사된 정보가 그 의미상에서 차이가 없고, 디지털정보를 최초 생성할 때 데이터 유실 등을 대비하기 위해 동일한 디지털정보를 다중으로 생성할 수도 있다. 따라서 디지털증거의 원본은 다수가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2. 비가시성 및 비가독성

디지털정보는 2진수의 형태로 조합된 데이터로서 표현의 최소단위인 비트(bit)로 표기된 값들의 집합이다. 비트로 표현된 디지털정보는 사람이 그 값을 확인하여 어떠한 내용인지 해독할 수 없고, 디지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환경에서 변환해야 사람이 내용을 인식할 수 있다. 디지털증거의 실제로 존재하는 값은 비트 표현의 집합이고, 이를 변환하는 과정을 거쳐야하므로 디지털증거의 무결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3. 취약성

디지털증거는 디지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기기에 의해 데이터를 다룰 수 있고, 디지털증거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의하여 수정, 삭제, 변경되기도 하며, 사용자가 다룰 수 없는 시스템 환경에 의해

자동적으로 수정, 삭제, 변경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디지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기기만 확보된다면 손쉽게 이를 수정, 삭제,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증거는 쉽게 은닉, 삭제, 위·변조할 수 있다. 디지털증거는 이러한 취약성을 가지므로 증거능력을 입증하기 위해 무결성, 동일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4. 대용량성

디지털증거의 대용량은 그 자체의 양이 방대함과 증거 가치가 있는 디지털정보를 찾아내기 위해 검토해야하는 디지털정보의 양이 방대함을 모두 의미한다. 먼저 법 위반 행위를 조사함에 있어 채택되는 디지털증거의 양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모든 정보가 디지털화되어 디지털정보로 생산, 가공, 유통되는 사회의 변화에 당연히 수반되는 것이다. 그리고 디지털증거를 선별하기 위해 증거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판별해야하는 디지털정보의 양이 방대해졌다. 이 또한 사회적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전자의 의미와 같은 요인에 기인한다. 결국 대용량은 중의적인 표현으로 보일 수 있지만 결국 같은 원인에 기인한 사실상 한 가지 의미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디지털증거의 대용량은 디지털증거 처리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먼저 디지털증거의 선별수집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선별대상이 많아짐에 따라 선별수집에 소요되는 시간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결국 현장 조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포괄수집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러나 포괄수집은 선별 과정을 수집 이후에 실행하게 됨에 따라 개인 정보 침해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존하여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5. 전문성

디지털정보는 하드웨어들과 소프트웨어들로 구성되는 컴퓨팅시스템에 의해 생산, 저장, 출력, 수정, 삭제될 수 있다. 컴퓨팅시스템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는 정보통신기술 발전함으로 인하여 그 종류와 기능이 다양하고 세분화되었다. 결국 디지털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겸비한 전문가가 필요하다. 또한, 대법원은 디지털증거를 취급한 자의 전문성을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판단에 중요한 요건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검찰, 경찰, 국세청 및 공정위 등 디지털증거를 필수적으로 취급해야하는 국가기관의 경우 전문가들로 구성된 디지털포렌식 전담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6. 네트워크 관련성

디지털증거는 물리적인 장소의 한계를 넘어 네트워크 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자료의 전송을 통해 다중의 장소에 보관될 수 있다. 디지털증거의 네트워크 관련성은 국경을 초월하여 인터넷으로 연결이 가능한 곳으로 지리적 범위 확대를 초래한다. 조사의 범위가 국내에 한정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법 집행의 지리적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제3절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디지털증거는 사이버 세계에 존재하는 것으로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유체물 증거와는 다른 특성이 있음을 앞서 살펴 보았다. 그렇

다면 디지털증거가 증거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요소 즉, 증거능력 또한 유체물의 그것과는 다를 것이다.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촉발하게 된 것은 일심회 사건 판결⁷⁾이다. 일심회 사건 판결 이후 학계에서는 다양한 견해들이 제시되어 왔다.⁸⁾ 대다수의 학설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은 동일성, 무결성, 진정성, 신뢰성으로 볼 수 있다.

1. 동일성

디지털증거의 동일성의 개념은 원본과 원본의 복제본, 또는 복제본으로부터 출력한 출력본이 서로 같아야 한다는 것이다. 왕재산 사건의 항소심⁹⁾에서는 동일성의 개념을 “저장매체 원본이 압수되더라도 원본의 훼손 방지를 위하여 복제본(하드카피 내지 이미징)을 만든 후 이를 분석하거나 그로부터 문건을 출력하게 된다. 따라서 복제본 내지는 복제본에서 출력한 문건이 증거로 제출된 경우 원본과

7)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

8) 이숙연 판사는 적법한 절차로 수집된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요건과 관련한 최근 학설을 정리하여 주요한 견해로는 ‘① 관련성(relevancy), 신뢰성(reliability), 진정성(authenticity), 원본성(originality), 동일성, 무결성 등을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을 위한 순차적인 관문으로 보는 견해, ② 디지털 증거의 특성상 증거능력 인정을 위하여 동일성, 무결성을 요하고 신뢰성, 전문성은 동일성과 무결성을 뒷받침하는 인자로 보는 견해, ③ 무결성(authenticity), 신뢰성(reliability), 원본성(best evidence)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견해, ④ 증거능력의 요건으로 진정성(authenticity), 무결성(integrity), 신뢰성(reliability)을 드는 견해, ⑤ 동일성은 사본 제출시 증거능력의 요건에 불과하고, 무결성은 그와 같은 동일성 인정을 위한 한 요소에 불과하며 동일성과 독립한 증거능력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 ⑥ 동일성과 무결성의 형사소송법적 지위를 진정성과 동일한 견해로 보는 견해, ⑦ 동일성(identity) 내지 무결성(integrity), 진정성(Authentication), 신뢰성(reliability), 원본성(best evidence)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이숙연,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 동일성·무결성 등의 증거법상 지위 및 개정 형사소송법 제313조의와의 관계”, 저스티스(통권 제161호), 한국법학원)

9) 서울고등법원 2013. 2. 8. 선고 2012노805 판결

복제본의 동일성, 복제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문건의 동일성 여부가 입증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동일성은 원본과 복제본 혹은 출력물간, 또는 같은 저장매체의 압수·수색 당시와 증거로 제출될 때의 비교에 주목하는 개념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대법원은 일심회 사건 판결¹⁰⁾에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의 증거 능력에 대하여 “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된 문건이 증거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된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디지털증거의 동일성은 디지털증거 원본, 원본의 복사본, 원본 또는 복사본으로부터 현출된 정보의 출력본이 서로 세 가지가 모두 같은 내용이라는 성질이다. 동일성 입증에는 해시함수를 활용한다. 원본과 복사본을 각각 해시함수의 입력으로 하였을 때, 그 결과인 해시값이 같은지 여부를 보면 동일성을 입증할 수 있다. 원본과 복사본의 동일성이 입증되면 복사본의 현출물인 출력본의 동일성을 입증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2. 무결성

디지털증거의 무결성은 디지털증거는 생명주기상 최초 단계인 수집부터 증거로서 입증 능력이 존재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어떠한 변경이 없다는 것이다. 왕재산 사건의 항소심¹¹⁾에서는 무결성의 개념을 “디지털증거의 압수에서 법정에 제출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에 주목하는 개념으로서, 디지털증거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 증거로 현출되기까지 일련의 절차에서 그 증거가 변개, 훼손 등 인위적 개작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은 일심회 사건 판결¹²⁾에서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이 압수시부터 문건 출

10)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

11) 서울고등법원 2013. 2. 8. 선고 2012노805 판결

력시까지 변경되지 않았음이 담보되어야 한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디지털증거의 무결성을 입증할 때도 동일성과 마찬가지로 해시함수를 활용한다. 디지털증거의 최초 수집단계의 해시값을 획득한 후 어떠한 경우에도 이 값이 변경되지 않았음을 보일 수 있다면 무결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다.

3. 진정성

디지털증거의 진정성이란 디지털증거의 작성자가 맞느냐는 형식적 진정성립과 디지털증거를 작성한 작성자의 의도한바대로 작성되었느냐에 대한 것이다. 진정성은 디지털증거의 전문법칙 적용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왕재산 사건 판례에서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사람이 정보저장매체에 입력하여 기억된 문자정보 또는 그 출력물을 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이는 실질에 있어서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사람이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크게 다를 바 없고, 압수 후의 보관 및 출력과정에 조작의 가능성이 있으며, 기본적으로 반대신문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그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되고, 따라서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문자정보의 내용의 진실성이 아닌 그와 같은 내용의 문자정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증거로 되는 경우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9.9.3. 선고 99도2317판결, 대법원 2013.2.15. 선고 2010도3504판결 등 참조). 나아가 어떤 진술을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할 때에는 그 진술이 전문증거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12)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 또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전문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하였다. 결국 디지털증거가 담고 있는 정보의 진실성을 다룰 문제인지 정보 그 자체가 증거로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이다.

4. 신뢰성

디지털증거의 신뢰성은 디지털포렌식 전문가와 디지털포렌식 도구와 방법에 대한 신뢰성을 의미한다.¹³⁾ 디지털증거는 취약성, 전문성, 비가시성·비가독성 등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수집, 분석 등 처리 과정에서 다양한 전문프로그램을 활용한 작업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디지털증거의 처리 결과에 따라 사건의 증거로 채택되는 과정에 대한 신뢰성은 중요한 문제이다. 대법원은 일심회 사건 판결¹⁴⁾에서 “법원 감정을 통해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 혹은 ‘하드카피’·‘이미징’한 매체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된 문건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용된 컴퓨터의 기계적 정확성, 프로그램의 신뢰성, 입력·처리·출력의 각 단계에서 조작자의 전문적인 기술능력과 정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라고 언급하였다. 디지털증거의 신뢰성은 무결성, 동일성의 입증에도 불구하고 디지털증거가 가지는 특성에 의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볼 수 있다. 결국 디지털증거는 아주 엄격한 환경에서 전문적인 인원을 동원하여 다뤄야하는 민감한 분야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3) 김범식, “전자(디지털)정보의 법정 증거 제출·현출 방안”, 비교형사법연구(제19권 제1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2017. 4.), 277면

14)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

제3장 공정거래위원회 사건 처리 개관

제1절 공정거래위원회의 연혁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 도입의 효시가 된 사건은 1963년 ‘삼분 사건(三粉事件)’이다. 설탕·밀가루·시멘트를 생산하던 사업자들이 독과점 시장을 형성하였고, 공급이 부족한 시장의 상황을 악용하여 담합을 통해 폭리를 취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다. 삼분사건을 계기로 1966년, 1969년, 1971년 등 3차례에 걸쳐 공정거래법 제정 시도가 공정거래정책에 대한 국민적 인식 부족과 재계의 반발로 번번이 좌절되었다.¹⁵⁾ 그리고 1973년 원유과동을 계기로 물가안정법이 제정되었고, 1975년 물가안정법을 보완하여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공정거래제도와 관련된 규정을 처음 포함하였다.

1980년에 들어 상위 3사가 전체 매출액의 50%를 차지하는 독과점 품목이 공산품 전체의 89%를 차지하고 업체들이 협회, 조합을 통하여 가격, 출고를 담합하는 등 카르텔의 폐해가 날로 심해지자, 당시의 집권 군부는 1980.12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개혁입법의 하나로 ‘공정거래법’(1984.4.1.시행)을 제정하여 경제기획원 장관의 처분에 앞선 필수적 심의, 의결기구로서 공정거래위원회를 설치하였고, 공정거래실이 사무를 집행토록 하였다.¹⁶⁾

1989년 전국 10개 대형백화점들이 세일가격을 속인 소위 사기세일사건이 발생하였고, 이를 계기로 1990년에 의원제안 입법형식으로 제2차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는데, 개정의 주요 내용은 법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정거래기능 강화와

15) 김형배, 공정거래법의 이론과 실제, 도서출판 삼일, 2019, 17면

16) 배현정,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위와 기능에 관한 법적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2002, 5-6면

공정거래운영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충하기 위한 공정거래기구의 개편이었으며, 공정거래업무를 전담하는 합의제 독립행정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 조직이 새롭게 탄생하게 되었다.¹⁷⁾ 이후 1994년 12월 국무총리산하의 중앙행정기관으로 독립, 1996년 위원장이 장관급으로 격상하여 오늘날의 공정거래위원회의 모습을 갖추었다.¹⁸⁾

제2절 공정거래위원회의 성격 및 권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할 목적¹⁹⁾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의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하에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이다.²⁰⁾ 공정거래위원회는 여타의 중앙행정기관과 마찬가지로 예산·인사·조직뿐만 아니라 법령과 고시·예규 등 하위 규정의 제·개정 권한 및 소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함에 있어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기능을 한다는 의미

17) 공정거래위원회 30년사, 2011, 2면

18) 강승훈, 행정조사를 위한 디지털 증거수집의 적법성 강화 방안: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9, 34면

1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8. 12., 법률 제16998호)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8. 12., 법률 제16998호) 제35조(공정거래위원회의 설치) ①이 법에 의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공정거래위원회를 둔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中央行政機關의 設置와 組織)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다.²¹⁾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준사법기관으로서 기능도 가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무처에 소속한 심사관이 소관 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혐의가 있을 경우 사무처장의 명의로 안건을 위원회에 상정한다. 그리고 위원회는 사무처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리·의결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의결의 구조는 심사관과 피심인 간의 대심구조를 취하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의 피심인은 의견진술권(공정거래법 제52조), 자료열람권(공정거래법 제52조의2) 등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 중 4인은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며, 임기(3년)와 신분을 보장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의 소를 제기할 경우 서울고등법원을 전속관할로 하고 있고(공정거래법 제55조),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을 법원의 1심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준사법기관성에 대하여 “사법절차를 가장 엄격한 적법절차의 하나라고 볼 때 그에 유사한 정도로 엄격하게 적법절차의 준수가 요구되는 절차를 ‘준사법절차’, 그러한 절차를 주재하는 기관을 ‘준사법기관’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반독점과 공정거래에 위배되는 행위를 규제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에 관련된 경제적 상황,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개별 기업의 구체적 상태 등을 신속·정확히 파악하여 걱정하고 신속한 대책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성을 규제기관이 갖추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는 규제기관의 행정적 전문화가 요청되고 다른 한편, 부당공동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가 대상 기업의 경제적 자유와 재산권에 미칠 수 있는 치명적 침해의 심각성에 상응하여 사전고지와 청문, 엄격한 사실인정과 공정한 판단 등을 보

21) 김형배, 공정거래법의 이론과 실제, 도서출판 삼일, 2019, 782면

장하는 절차적 엄격성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이점에서는 규제기관의 사법적 엄격화가 요청된다. 만일 행정적 전문성만을 강조하여 그 권한을 일반 행정기관에 그대로 맡긴다면 행정기관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대하여지고 그 권한이 자의적으로 남용될 우려가 있다. 한편 사법절차적 엄격성만을 강조하여 이를 법원에 맡긴다면 통상의 사법절차를 모두 거치는 데 따른 시간의 경과 등으로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 따라서 행정부에 속하지도 않고 사법부에도 속하지 않는 제3의 독립기관에게 이를 맡길 필요성이 있고, 이에 따라 행정권과 사법권으로부터 분리된 독립적 기관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를 설치하여 독립규제위원회로서 독립규제와 공정거래 유지의 국가기능을 담당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연히 행정적 전문성과 사법절차적 엄격성을 함께 가져야 하며 그 규제절차는 당연히 '준사법절차'로서의 내용을 가져야만 하는 것이다.”라고 판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를 준사법절차를 주재하는 준사법기관이라고 판단한 바 있고,²²⁾ 서울고등법원도 “공정거래법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소속, 구성 및 위원의 신분보장 등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이나, 그 처분에 대한 불복을 1심인 행정법원이 아니라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비추어, 공정거래위원회는 준사법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으며 그 의결도 준사법적 판단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볼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²³⁾

제3절 공정거래위원회 사건 처리 절차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을 처리하는 절차는 공정거래법 제55조의 2(사건처리절차등)²⁴⁾에 따라 고시하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22) 헌법재판소 2003.7.24. 선고 2001헌가25 전원재판부 결정의 소수의견

23) 서울고등법원 2004. 11. 24. 선고 2003누9000 판결(확정)

및 사건철차 등에 관한 규칙'²⁵⁾(이하 '사건처리절차규칙')에서 정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는 사건의 인지, 사전심사, 심사착수 후 조사 및 심사, 안건상정, 위원회 심의 및 의결의 단계로 구성된다.

1. 사건의 인지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위반 혐의를 직권으로 인지(공정거래법 제 49조 제1항)하여 조사할 수 있고, 신고(공정거래법 제49조 제2항)를 받아 조사할 수도 있다. 이 때 경쟁사업자, 이해관계자 및 개인 등 누구든지 신고를 할 수 있고, 신고를 하고자하는 자는 신고인의 성명·주소, 피신고인의 주소·대표자성명 및 사업내용, 피신고인의 위반행위내용,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등을 기재한 서면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한다. 다만, 신고사항이 신고사항이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두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의 법적 성격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신고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같은 법에 위반되는 사실에 관한 조사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단서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고 신고인에게 그 신고 내용에 따른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청구권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고, (중략)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 내용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이를 거부하는 취지로 무혐의 또는 각하 처리한다는 내용의 회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그 신고인의 권리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그

2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8. 12., 법률 제16998호)

제55조의2(사건처리절차등)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사건의 처리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25)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0-10호, 2020. 7. 29. 시행

러한 조치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²⁶⁾고 판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집행은 공익적 관점에서 경쟁질서 그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경쟁질서 유지와 관련한 사업자의 사적이익까지 보호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찬성하는 견해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의적인 법집행에 대한 사법적 통제라는 측면에서 항고소송을 통해 다룰 수 있도록 하되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신고인의 범위를 제한하자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²⁷⁾

2. 사전심사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직권으로 인지하거나, 신고를 접수하게 되면 심사관²⁸⁾으로 하여금 심사절차의 개시에 앞서 사실에 대한 조사와 사전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심사관은 신고 또는 직권인지 내용의 구체성, 시장의 특성, 증거자료의 유무 등을 검토하여 사건심사를 착수할지 심사를 개시하지 않을지(심사불개시) 여부를 판단한다.

심사관은 사건처리절차규칙 제12조 제1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34가지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심사를 개시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처분시효가 도과하여 심사불개시를 결정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사건처리절차규칙 제12조는 공정거래법 제48조 제2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26)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누4515 판결 및 대법원 2000. 4. 11. 선고 98두 5682 판결

27) 김형배, 공정거래법의 이론과 실제, 도서출판 삼일, 2019, 789면

28)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 2020-10호, 2020. 7. 29. 시행)

제10조(사전심사) ①심사관은 공정거래위원회 직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건이 속하는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 심판관리관, 시장구조개선정책관, 유통정책관 또는 지방사무소장이 된다.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반복된 신고에 대한 간이절차를 정한 것이므로 위헌 내지 위법하지 않다”라고 결정하였다.

3. 심사착수 후 조사 및 심사

심사관은 사전심사 결과 심사불개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장에게 서면 또는 전산망을 이용하여 보고(사건심사 착수보고)하여야 한다(사건처리절차규칙 제11조 제1항). 심사관 또는 조사공무원은 신고내용 또는 직권인지 사건에 대하여 사건심사 착수보고를 한 경우 이를 피조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지만 통지로 인하여 자료나 물건의 조작·인멸 등이 우려되는 등 조사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사건처리절차규칙 제11조 제4항).

심사관은 사건심사 착수보고를 한 후 본 조사를 실시한다. 이때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하는 조사는 임의조사로 조사를 받는 대상자의 자발적 동의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조사상대방이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영장에 의한 개인의 체포·구금, 조사대상 사무소의 압수·수색 등과 같이 강제로 조사를 할 수는 없고, 다만 조사대상자의 조사 불응, 조사 방해, 자료제출 거부, 허위 자료 제출 등에 대하여 형벌 또는 과태료 부과를 통해 조사를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다²⁹⁾.

4. 안건상정

심사관은 현장조사, 자료 수집, 관련자 진술조사 등을 통해 사실

29) 김형배, 공정거래법의 이론과 실제, 도서출판 삼일, 2019, 792면

관계를 파악한 후 결과에 따라서 사건의 심리·의결을 위하여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심사관은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경찰의 공소장격인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에 안건을 상정한다. 또한, 심사관은 전원회의 소회의에 심사보고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피심인에게 심의절차의 개시 사실을 고지하고, 심사보고서와 그 첨부자료의 목록 및 첨부자료를 송부하며,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것을 통지한다.

5. 심의 준비

피심인들이 심사보고서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는 기간은 전원회의의 경우 4주, 소회의의 경우 3주이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의견서 제출기한의 연장이 필요할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문서로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사건절차규칙 제29조 제10항, 제16항).

전원회의의 의장은 심사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상임위원 1인을 주심위원으로 지정(사건절차규칙 제30조 제1항)하고, 주심위원 및 소회의 의장은 사건의 심의부의 가능여부를 사전 검토하고 미비점 발견시 담당심사관에게 보완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사건절차규칙 제30조 제2항).

주심위원 또는 소회의 의장은 피심인이 심사보고서의 사실관계, 위법성 판단 등을 다투는 경우,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쟁점이 많은 경우, 전원회의 안건의 경우, 피심인이 의견청취절차 진행을 요청한 안건으로서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 심의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견청취절차를 실시할 수 있다(사건절차규칙 제30조의2). 의견청취절차는 원칙적으로 당해 사건의 주심위원 등, 심사관, 피심인, 심의·의결 업무를 보좌하는 공무원이 모두 참석하여야 진행할 수 있고

(사건절차규칙 제30조의4), 의견청취절차의 진행은 구술로 심사관과 피심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질의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하며(사건절차규칙 제30조의5 제1항), 주심위원 및 소회의 의장은 의견청취절차를 중립적 입장에서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심사관과 피심인에게 주장의 기회를 동등하게 부여하여야 한다(사건절차규칙 제30조의5 제2항).

6. 위원회 심의 및 의결

심의는 ‘인정심문 → 심사관의 의견진술(심사결과 요지 진술) → 피심인의 의견진술 → 증거조사·참고인 신문·감정인 의견진술 → 심사관의 조치의견 진술 → 피심인의 최후진술’ 순서로 진행된다.

인정심문은 의장이 피심인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사건절차규칙 제35조)이고, 심사관의 의견진술은 의장이 심사관으로 하여금 심사보고서에 의하여 심사결과를 진술하게 하는 절차이며(사건절차규칙 제38조), 피심인의 의견진술은 의장이 심사관의 의견진술이 끝난 후 피심인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하는 절차이다. 심의 과정에서 피심인, 심사관의 요청 또는 의장의 직권에 의해 증거조사, 참고인 신문, 감정인의 의견진술을 진행할 수 있다. 회의의 의장은 심의를 종결하기 전에 심사관에게 시정조치의 종류 및 내용, 과징금 부과, 고발 등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하고(사건절차규칙 제43조 제1항), 피심인에게 마지막으로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사건절차규칙 제43조 제1항).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는 사실의 오인이 있는 경우, 법령의 해석 또는 적용에 착오가 있는 경우, 심사관의 심사종결이 있을 후 심사종결 사유와 관련이 있는 새로운 사실 또는 증거가 발견된 경우, 기타 위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심사관에게 당해 사건에

대한 재심사를 명할 수 있다(사건처리절차규칙 제45조).

심판정에서 심의를 마친 후 심의에 참여한 위원들이 별도로 모여 당해 사건의 법 위반 여부 및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의결을 하게 되는데, 이를 ‘합의 과정’이라 하고, 그 결과물을 의결 또는 합의 내용이라하며, 합의 결과는 의결서로 작성되어 공개되며, 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소회의는 전원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공정거래법 제42조 제1항, 제2항).

7.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공정거래법 제53조 제1항).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해 60일 이내에 재결을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재결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안에서 결정으로 그 그간을 연장할 수 있다(공정거래법 제53조 제2항). 처분은 시정명령, 과징금 납부명령, 과태료 납부명령, 공표명령, 경고 등 당사자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말하므로,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행정청의 내부의사결정에 불과한 무혐의, 고발결정 및 요청, 입찰참가제한 요청 등은 처분에 해당되지 않아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다.³⁰⁾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받은 자는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제4절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조사

30) 김형배, 공정거래법의 이론과 실제, 도서출판 삼일, 2019, 803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조사는 조사를 받는 자의 자발적 동의를 전제로 하는 임의조사이고, 조사 권한, 방법 및 피조사인의 방어권 등은 공정거래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50조의2(조사권의 남용금지), 제50조의3(조사 등의 연기신청)에 규정되어 있다.

심사관 또는 조사공원은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의 청취,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 위촉,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에 대하여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기타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영치를 할 수 있다(공정거래법 제50조 제1항). 그리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 및 경영상황, 장부·서류, 전산자료·음성녹음자료·화상자료 등과 물건을 조사할 수 있고, 지정된 장소에서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으며(공정거래법 제50조 제2항),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에 대하여 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영치를 할 수 있다(공정거래법 제50조 제3항).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권한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하고(공정거래법 제50조 제4항),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공정거래법 제50조의2).

공정거래법에 의한 조사를 받게 되는 피조사인은 천재·지변 밖의 곤란한 사유로 인하여 처분을 이행하거나 조사를 받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처분 또는 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고(공정거래법 제50조의3 제1항), 공정거래위원회는 처분 또는 조사의 연기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유를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 또는 조사를 연기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 제50조의3 제2항).

제3절에서 열거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 절차 중 실제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행위사실을 파악하는 절차는 심사착수 후 조사 및 심사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심사관의 조사는 크게 현장조사와 진술조사로 이루어진다. 현장조사는 주로 혐의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진술조사는 자료 수집으로 확인할 수 없는 가담자의 목적, 의도 또는 시장의 관례 등을 주로 확인한다. 현장조사는 조사를 받는 기업의 영업 및 생산 활동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간과 범위를 한정하여 실시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집하는 사건의 증거들은 주로 기업의 경영 활동 중에 생산된 정보들이고, 이는 전자문서, 이메일 등 대부분 디지털정보들이 대부분이다. 서론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현대 문명의 디지털화로 인해 디지털정보의 생산량은 폭증하고 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상인 기업에서 생산하는 정보량도 폭증하고 있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조사대상에서 생산되는 정보량이 많아짐에 따라 확인 대상이 되는 디지털정보의 대상도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하는 정보의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디지털포렌식 기술의 활용도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제5절 공정거래위원회의 디지털포렌식

1. 디지털포렌식 관련 법제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제50조 제2항³¹⁾에 의해 사건을 조

3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8. 12., 법률 제16998호) 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공무원[제65조(權限의 위임·委託)의 규정에 의한 위임

사할 때 디지털증거를 취급하고 처리할 수 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디지털증거를 수집, 운반, 분석, 현출 및 관리하는 절차와 그 과정에서 준수해야하는 사항을 정한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³²⁾, 디지털조사 분석 업무수행에 필요한 디지털조사분석장비의 취득, 사용, 관리 및 폐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디지털조사분석장비의 취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³³⁾, 디지털포렌식 지원과 정확하고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하여 디지털 증거의 수집 및 분석 등과 관련하여 디지털조사분석과와 사건담당부서가 준수해야 할 세부사항을 규정한 ‘디지털조사분석과와 사건담당부서간 업무처리 지침’³⁴⁾, 수집한 디지털 자료의 보안을 위하여 자료 등록, 관리 및 폐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한 ‘피조사업체에서 수집한 디지털 자료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³⁵⁾을 운영하고 있다.

2. 공정거래위원회의 디지털증거 수집관련 규정

공정거래위원회의 디지털증거 수집과 관련된 규정은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수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문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제1항은 ‘디지털 자료는 자료의 범위를 정하여 조사현장에서 출력 또는 이미징 방식으로 수집

을 받은 기관의 소속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 및 경영상황, 장부·서류, 전산자료·음성 녹음자료·화상자료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생략)

- 32)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8-4호, 2018. 4. 3. 시행)
- 33) 디지털조사분석장비의 취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298호, 2018. 4. 3. 시행)
- 34) 디지털조사분석과와 사건담당부서간 업무처리 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296호, 2018. 4. 3. 시행)
- 35) 피조사업체에서 수집한 디지털 자료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297호, 2018. 4. 3. 시행)

한다.’라고 하면서 디지털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에는 사건 관련성이 있는 디지털증거를 출력하여 문서의 형태로 수집하거나, 이미징이라는 일종의 압축기술로 디지털증거를 디지털파일 형태를 유지한 채로 수집함을 정의하고 있다. 제1항에서 정의하고 있는 수집방법은 디지털증거 수집의 원칙인 선별수집이다.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인력에 의한 기술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수집대상 디지털 자료의 대량성으로 자료수집에 시간이 과도하게 소요되는 등 조사현장에서 자료의 범위를 정하여 이미징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디지털 저장매체를 영치하거나 디지털 자료 전부를 이미징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선별수집에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 포괄수집을 예외적으로 허용함을 규정하고 있다.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별수집을 하기에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 예외적으로 디지털정보가 저장된 디지털 저장매체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하여 영치하거나 이미징할 수 있도록함으로써 포괄수집을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제3항은 ‘ 제2항에 따라 영치한 디지털 저장매체나 이미징한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 디지털조사분석과(세종청사 사무실)로 운반하여 제1항의 방법으로 디지털 자료를 수집한다.’라고 하면서 포괄수집으로 생략된 선별의 절차를 선별수집에 준하는 방법으로 사후에 공정거래위원회 디지털조사분석과에서 선별을 실시한 후 최종적으로 디지털증거를 수집한다고 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4항은 ‘사건담당 조사공무원과 디지털조사분석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이미징 방식으로 디지털 자료를 수집한 경우 자료수집 일시·장소, 사용자정보, 수집도구, 해시값 등 관련 내용을 기재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조사업체 관계자로부터 확인 서명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선별수집 또는 포괄수집을 수행하여 디지털증거를 디지털파일 형태를 유지하여 이미징을 통해 수집한 결과물에 대하여 자료수집 일시·장소, 사용자정보, 수집도구, 해

시값 등에 대한 피조사인의 확인 서명을 받도록하고 있다. 제4항의 절차는 제2장 제3절에서 열거한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디지털증거 수집 과정에 대한 피조사인의 참여권 보장을 위하여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참관·선별 및 복사본 교부)에 피조사인은 디지털 자료의 수집과정에 참관, 자료의 선별, 수집한 이미지 파일에 대한 복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 또는 교부하여야 함을 규정하여 피조사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있다.

3. 선별수집

선별수집은 현장조사 시 디지털증거를 수집하는 기본 원칙이 된다. 피조사인의 동의를 획득하여 자료를 열람하고,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디지털증거를 출력한 출력본 또는 선별된 디지털증거만을 이미징하여 전자파일의 형태로 수집한다. 이때 출력본에는 피조사업체가 자발적 동의 하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하여 제출하는 자료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피조사인의 직인과 명판을 날인하고, 전자파일의 경우 디지털증거를 선별하여 수집한 과정의 제반 정보를 담은 서류에 참여자의 서명을 징구함으로써 증거능력을 확보하게 된다. 선별수집의 방법으로 수집한 디지털증거는 피조사인의 참여하에 사건 관련성을 기준으로 수집하였으므로 별도의 선별 절차를 수행하지는 않으나, 피조사인과 선별 절차를 수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피조사인이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실에 출석하여 선별을 진행한다.

4. 포괄수집

포괄수집은 수집 → 분석 → 선별의 순서를 거치게 되면서 사건 관련성이 없는 자료를 배제한 후 최종적인 디지털증거를 확정하게 된다. 우선 현장조사 시 포괄수집의 대상이 되는 디지털 저장매체를 특정하게 된다. 포괄수집의 대상은 주로 사건 관련성이 있는 자료가 다량 저장되어 있는 디지털 저장장치로 디지털포렌식 기술의 전문가를 통해 재처리를 해야하는 제약이 있거나 자료의 대용량성으로 현장조사 기간에 선별수집이 불가할 경우 디지털저장매체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이미징한다. 현장조사에서 포괄수집이 되는 대상에 대한 증거 능력에 대해서는 앞서 디지털포렌식 관련 법제에서 본 바와 같이 피조사인에게 자료조사 관련 내용에 대한 확인을 청구함으로써 증거 능력을 확보하게 된다. 현장조사에서 포괄수집으로 이미징한 디지털증거를 공정거래위원회로 운반한 후 피조사인이 제출했을 당시의 상태와 동일한 상태로 복원하는 재처리 과정을 선행한다. 이미징은 일종의 압축기술로 현장조사시 포괄수집의 대상이 되는 디지털저장매체의 현재상태를 마치 사진을 찍듯이 복제본을 생성하는 방법이다. 이미징을 통해 취득한 디지털증거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디지털증거분석시스템에 등록하고, 이미징한 파일로부터 이미징의 대상이 되었던 디지털저장매체의 상태와 동일한 상태를 구현해 내는 재처리 과정을 선행한다. 이러한 과정은 디지털정보가 매체독립적인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구현할 수 있다. 재처리 이후에는 디지털 저장매체의 상태를 분석한다. 분석은 삭제한 디지털 정보를 복원하고, 디지털정보의 메타데이터를 이용해 디지털정보의 위·변조 여부를 판별하는 분석, 그리고 사건 관련성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요 키워드들을 기준으로 하는 키워드 검색으로 구성된다. 삭제된 파일

을 복구하고, 확장자를 변경하는 등 변조한 파일들을 본래의 형태로 복원시킨 결과를 기준으로 키워드 검색을 진행한다. 키워드 검색에 사용될 키워드들을 선정하고, 디지털정보에 매칭되는 키워드의 종류, 빈도수 등을 기준으로 정렬한 결과를 도출해낸다. 분석을 마친 디지털증거를 기준으로 사건담당공무원은 피조사인의 디지털 증거 선별 시 참여를 희망하는지 의견을 조회한 후 선별 시 참여를 희망하지 않을 경우 디지털조사분석전문관과 선별을 진행하고, 선별 시 참여를 희망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실(정부세종청사 소재)에 증거 선별을 위한 출석 일정을 협의한다. 피조사인이 선별 참여를 위해 출석(피조사인의 희망에 따라 변호인 동행 가능)하게 되면, 분석결과를 함께 열람하고 선별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5. 디지털증거 포괄수집의 중요성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조사에서 디지털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은 선별수집과 포괄수집 두 가지로 구분된다. 그리고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는 자발적 동의를 기반으로 하는 임의조사로 디지털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은 피조사인에게 열람 및 참여에 대한 동의를 획득했음을 전제로 해야한다.

선별수집은 디지털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피조사인의 입회하에 디지털정보들을 열람하고 조사공무원이 사건 관련성을 판단하여 증거가치가 있는 디지털정보만을 출력하거나 이미징을 통한 디지털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선별과 수집이 사실상 동시에 일어난다. 그리고 선별수집은 현존하고 있는 디지털정보들을 열람하여 그 중 사건 관련성이 있는 자료만을 수집할 수 밖에 없는 기술적 한계가 수반된다. 디지털포렌식 기술에서 삭제, 위·변조, 은닉한 데

이터를 찾아내기 위한 분석절차에는 상당한 시간이 수반되기 때문에 시간적인 제약이 있는 현장조사 기간 내에 선별수집만을 통해 디지털증거를 확보할 때 충분함과 빠짐없음을 보장하기란 어려울 것이다.

포괄수집은 디지털증거를 수집하는 예외적인 방법이지만, 최근의 조사 여건을 고려할 때 중요성이 부각되는 방법이다. 포괄수집은 현장조사 시 디지털저장매체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이미징한 후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실에서 선별을 거쳐 최종적으로 디지털증거 수집을 확정하는 방법이다. 서론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기업의 업무환경이 전산화되고 모든 자료를 정보시스템을 통해서 관리함에 따라 디지털정보의 대용량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조사 환경에서 사실상 모든 자료를 열람하여 선별수집하기란 불가능에 가깝게 되었다. 기업은 업무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간의 축적된 자료를 인수·인계하여 현재 업무담당자가 모든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현장조사를 진행할 때 현재업무담당자가 보유한 디지털정보들을 열람하여 사건 관련성이 있는 자료가 있을 경우 모든 자료를 열람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 포괄수집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정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제4장 디지털증거 포괄수집의 쟁점

제1절 디지털증거 수집에 대한 피조사인의 참여권 보장 문제

공정거래위원회는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를 통해 피조사인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있다. 선별수집은 수집과정이 현장조사 시 시작과 완료가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피조사업체의 동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참여권이 자연스럽게 보장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포괄수집의 경우 선별 절차가 별도로 이루어짐에 따라 선별수집에 비해 피조사인에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출석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포괄수집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증거로 수집할 수 있는 일차적 대상을 광범위하게 확보하게 되는 수집방법이고,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피조사인의 선별 시 참여가 선별수집보다 더욱 큰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음도 분명하다. 결국 피조사인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해 출석 선별 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나, 당초의 의도와는 다르게 피조사인에게 부담을 부과하게 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운영되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가능성이 발생한다. 물론 디지털증거는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디지털증거분석시스템이라는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증거를 선별해야하는 제약이 있기 때문에 선별에 대한 참여를 원할 경우 출석을 유일한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은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피심인에게 보장된 참여권을 악용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한다는 것도 문제점이다. 현행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참관·선별·복사본교부)와 디지털조사분석과와 사건담당부서간 업무처리 지침 제5조(자료선별, 참관, 보안해

제)에 규정하고 있는 포괄수집에 의한 선별 일정에는 피심인과의 협의를 통해 정한다고 정의하였으며, 선별 일정을 정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지 않고 있어 이를 악용하여 사건 처리 일정을 방해하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결국 포괄수집은 디지털증거를 적법하게 수집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보장되어야하는 피조사인의 참여권으로 인해 피조사인에게는 부담을 증과하는 문제가 될 수도, 공정거래위원회에게는 사건 처리의 일정을 지연시키려는 목적의 피조사인들의 오·남용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제2절 피조사인의 법익 침해 가능성

포괄수집은 디지털 저장매체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해 디지털 정보를 획득한 후 분석 및 선별 절차를 거쳐 디지털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이다. 이때 디지털 저장매체에는 디지털 기기를 사용한 사람의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 사건과는 무관한 기업의 경영관련 기밀자료 등이 저장되어있을 수 있다. 피조사인의 입장에서는 사생활 자료의 경우에는 본인 외 타인이, 기업의 기밀자료의 경우에는 외부인이 열람하는 것 자체에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사건을 조사함에 따라서 이러한 자료들을 열람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결국 공정거래위원회는 사건관련성에 대한 판단이, 피조사인의 입장에서는 민감한 자료들이 공개되었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가 서로 이해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포괄수집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이유도 피조사인의 법익 침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포괄수집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피조사인의 민감정보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포괄수

집으로 인한 피조사인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제3절 사건 관련성 판단상 쟁점

기업의 업무자료에 대해 ‘사건 관련성을 언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가?’라는 물음이 생길 수 있다. 법 위반 혐의는 그 징후나 외형만으로는 특정되지 않고, 일정한 수준의 단서를 통해 특정될 수 있다. 혐의가 특정이 되면, 이를 바탕으로 사건 심사에 착수할지를 결정한다. 사건심사가 개시되면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현장조사 시 포괄수집으로 디지털정보를 확보한 후 사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 외 모든 자료는 원칙적으로 폐기한다. 그런데 현장조사 직후 별도의 일정을 잡는 시점에서 디지털정보에 대한 증거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가는 중요한 문제이다. 중요한 디지털증거가 가치 판단에 의해 혐의를 밝히는 주요 증거가 될 수도 있지만, 선별 과정에서 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으로 삭제가 된다면 증거 능력을 검토할 여지조차 사라지기 때문이다.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인식하고 확정적인 기술이 가능하려면, 다양한 자료와 인과관계의 개연성, 내·외부 환경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한다. 현장조사는 심사관이 사건을 심사하는 과정 중 초기에 이루어지는 절차이고,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주요 증거들이 확보되는 가장 중요한 심사 절차이기도하다. 따라서 현장조사 중에 수집된 자료들은 신중하고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 특히 포괄수집의 대상이 되는 디지털 저장매체는 디지털 정보를 열람하면서 자료에 대한 검토를 집중적으로 해야하고, 그 대상이 방대하였기 때문에 특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포괄수집에서 선별은 가장 중요한 절차라고 보아도 무방하

다.

포괄수집은 사건 관련성이 있는 자료의 대용량성이 있을 경우에 포괄수집이 수반되기 때문에 선별 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한다. 혐의 관련 자료가 다량으로 있을 가능성이 높은 디지털저장매체를 피조사업체가 보유하고 있던 대로 재현해 놓은 실체에 대한 검증과 선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포괄수집 시 선별은 키워드 검색 결과를 토대로 매칭이 되지 않은 자료들은 사실상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대체로 선별 결과 모두 폐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피조사인의 반복적인 출석의 부담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들로 인해 키워드 검색 결과 매칭된 디지털정보만을 열람하더라도 선별 시간의 제약이 현실적으로 큰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키워드 검색의 결과는 현장조사 직후의 시점을 기준으로 증거 가치가 있을 수 있는 디지털정보를 필터링 한 것에 불과하지만, 관련자들의 면담, 진술 등을 통해 사후에 파악될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가 누락되었을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한다. 실제로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시점에서는 피조사인이 속해있는 산업에서 통용되는 은어, 약어들은 알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결국 현행 포괄수집의 절차에서 분석과 선별을 거쳐 특정된 자료들만 디지털증거로 채택이 되는데, 키워드 분석에 의존적인 결과를 기초로 선별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 비추어볼 때, 중요 증거들이 사장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이를 절차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제5장 디지털 증거 선별 절차의 개선 방안

제1절 원격 선별 프레임워크 도입

피조사인에게 현행 대면 선별외 추가적인 선별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피조사인의 출석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피조사인들은 대면 선별에 참여를 할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시공간의 제약, 이에 따르는 법률비용의 소모가 될 것이다. 피조사인들의 입장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노동력과 비용이 추가로 투입됨으로써 기업의 건전성을 저해되는 것을 염려했다. 그리고 피조사인들은 선별에 참여하면서 사건담당공무원과 사건 관련성 판단에 있어 이견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기 어려울 수 있다. 피조사인들에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출석해야한다는 사실 그 자체가 중압감과 부담이 될 수 있다. 피조사인의 신분으로 조사기관에 출석한다는 것 자체가 심적 부담으로 작용하여 선별 과정에서 적절한 의견 제시가 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물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건을 심사하여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피심인의 의견을 청취하는 방어권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있으나 조사 초기에 피심인들의 의도와는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증거자료들로 인한 마찰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피조사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행 대면 선별 방법과 더불어 ‘원격 선별 프레임워크’를 마련하여 피조사인이 선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원격 선별 프레임워크는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인터넷이 연결된 곳 어디서나 접속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으로 구현하고, 피조사인에게 접속권한을 한시적으로 부여한다. 피조사인은 공정거래위원

회가 현장조사를 마친 후 수집한 정보를 업로드하면 이를 확인한다. 사건담당공무원과 디지털조사분석관이 자료들을 열람하여 사건 관련성 유무를 판단하여 디지털정보를 분류한다. 이때 디지털정보를 분류하는 과정을 녹화하고 녹화한 파일을 원격 선별 프레임워크에 업로드하여 피조사인이 확인할 수 있게 한다. 피조사인은 선별 과정을 열람한 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사건 관련성이 없음이 명백한 일부 디지털정보만을 삭제한다. 그리고 사건담당공무원은 사건 조사를 진행하면서 혐의 확인에 필요한 디지털정보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 재차 선별하고, 다시 이 과정도 녹화하여 피조사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적으로 거친 후 심사관이 사건 심사를 완료하여 안건을 상정할 때 최종적으로 확정된 디지털증거만을 남기고 나머지 자료를 일괄 폐기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피조사인이 디지털증거 선별 과정에 참여기회를 부여하게 되면, 반복적인 선별 작업에 모두 참여해야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사건담당공무원은 일정 혐의 및 사건처리 기간의 지연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디지털조사분석시스템³⁶⁾을 구축하여 디지털포렌식과 관련된 업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원격 선별 프레임워크는 디지털조사분석시스템과 연계하여 피조사인이 접속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으로 구축함으로써 구현이 가능할 것이다. 원격 선별 프레임워크를 통해 제공되는 선별은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원격 선별 프레임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URL을 제공하고, 피조사인은 범인 인증서 등을 통해 사용자 등록

36)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9호
9."디지털포렌식시스템"이란 공정거래위원회의 디지털포렌식 업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구축된 내부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한 후 시스템에 접속한다.

② 디지털조사분석관은 획득한 디지털 정보를 분석하여 분석결과를 시스템에 업로드하고, 시스템은 업로드한 디지털 정보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사건담당공무원은 선별 일정을 결정하여 피조사인에게 통지한다.

③ 사건담당공무원은 피조사인이 목록을 확인한 후 디지털조사분석관과 함께 디지털증거 선별을 실시하고, 선별에 사용되는 PC의 모니터 화면을 모두 동영상으로 녹화한 후 동영상파일을 원격 선별 프레임워크에 업로드한다.

④ 피조사인은 업로드한 선별 영상을 확인한 후 선별 과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선별 과정에 대한 이의가 없을 경우 전 과정에 대한 동의 의사를 시스템에 등록한다.

⑤ 피조사인의 선별 과정에 대해 동의를 등록하면 원격 선별의 전 과정을 레포팅하여 사건담당공무원과 피조사인이 디지털서명하도록 하여 선별 절차를 종료한다.

원격 선별 프레임워크를 정보시스템으로 구현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첫째, 디지털조사분석시스템은 업무망 영역에서 운영되는 정보 시스템이지만 원격 선별 프레임워크는 인터넷망 영역에서 운영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피조사인으로부터 획득한 자료의 망간 이동이 수반될 수 밖에 없기때문에 보안에 유의해야한다. 모든 자료는 암호화된 형태로 원격 선별 프레임워크를 통한 합법적인 절차를 거친 정당한 사용자에게만 열람이 될 수 있도록 유통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원격 선별 프레임워크는 인터넷망 영역에서 운영되는 시스템이지만, 특정 사용자에게만 접속할 수 있도록 접근권한이 관리되어야한다. 피조사인만이 접속할 수 있도록 접근 URL을 피조

사인에게만 공개하고, 원격 선별 프레임워크에 접속할 때 다중인증 방식으로 사용자 인증을 통해 접속하도록 사용자 권한관리를 강화해야한다.

셋째, 사건담당공무원의 선별 과정을 통해 조사기법이 노출될 수 있고, 피조사인의 혐의가 사전에 유출될 수 있는 우려를 차단해야한다. 사건담당공무원의 선별 과정을 통해 기업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 조사 노하우나 기법을 유추해 낼 수 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의 법 위반 행위가 더욱 은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피조사인들은 디지털증거로 채택한 자료들을 통해 자신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게 된 혐의를 파악할 수 있어 조사 단계에서 위장폐업을 하거나 자료 열람권 등 방어권을 이용하여 조사 일정을 악의적으로 지연시킬 소지가 있다.

원격 선별 프레임워크를 통해 피조사인의 참여권을 강화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사건 처리의 일정 관리 및 디지털증거의 관리를 강화할 수 있지만, 앞서 열거한 바와 같은 부작용이나 유의점에 대한 대책을 충실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제2절 디지털정보 접근 제한권 부여

선별수집과 포괄수집은 기본적으로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자료만을 확보하여 기업의 영업 비밀이나 개인의 프라이버시 등이 누출되어 개인 또는 기업의 법익을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해야한다. 그러나 포괄수집은 증거가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된 디지털정보를 일괄적으로 획득하게 됨에 따라서 피조사인과 피조사인의 소속 임직원의 법익을 해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획득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포괄수집으로 디지털정보를 획득한 후 필수적으로 선별 절차를 거치게 된다. 포괄

수집은 삭제된 디지털정보를 복구할 수 있고 디지털정보들에 대한 다차원 분석을 통해 사건 관련성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이 가능한 장점은 있지만, 피조사인으로서의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와는 무관하면서 열람을 꺼리게 될 수 있는 자료까지도 공정거래위원회가 획득하게 되는 점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포괄 수집한 디지털정보를 피조사인이 입회한 이후에 열람할 수 있다는 것을 확정지을 수 있는 절차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선별수집의 경우 사건 관련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업의 영업비밀도 함께 담겨있는 디지털증거라면, 비밀자료에 한해 수집단계에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디지털증거 자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협조한 후 출석 선별을 추가적으로 진행하는 절차를 마련한다면, 피조사인의 입장에서는 출석 선별의 부담보다 민감한 정보의 조사기관의 열람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출석 선별에 임할 가능성이 높다. 선별수집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 관련성 판단과 피조사인의 민감정보 제공이 대립하는 과정에서 상호간의 논의를 통해 사건 관련이 있는 일부만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디지털증거를 채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포괄수집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획득한 디지털정보들의 분석일정을 사전에 고지하고, 분석이 시작되기 전까지 분석대상에서 제외를 희망하는 파일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조사인이 분석 제외를 희망한 파일을 제외한 나머지를 분석한다. 그 이후 피조사인이 분석 제외한 파일에 대한 사건 관련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 후 사건과 전혀 무관하다는 것이 소명되면 즉시 폐기하도록 하면 피조사인들의 법익 침해 소지가 줄어들 것이다.

다만, 피조사인들이 법 위반 혐의를 숨기기 위한 의도로 디지털

증거의 접근을 제한하는 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예방하려면 혐의와 관련이 없음을 피조사인에게 해당자료의 혐의 무관련성을 입증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만일, 피조사인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할 경우에 증거 채택을 강행하기 보다는 심의 단계에서 증거조사의 기회를 활용하는 방법도 활용할 만하다.

제3절 디지털증거 단계적 선별 방안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위반 사건을 처리하는 시간이 짧게는 수 개월에서 길게는 수 년이 걸린다. 이는 사건의 행위 사실을 밝혀내는 것이 어려운 사정도 있으나, 사건의 복잡함과 법 위반 행위의 기간이 장기화 등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위반 사실을 조사하고 처분하는 과정 중 디지털증거를 수집하고 선별하는 과정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디지털증거는 혐의를 밝히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료로 수집과 선별 절차를 단기간에 마치는 것은 주요 증거가 사장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포괄수집의 경우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 크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는 방법으로는 포괄수집에 의한 디지털증거 획득 절차를 단계적으로 구성함으로써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현행 포괄수집은 디지털정보를 일괄 획득한 이후 선별을 통해 디지털증거를 수집하게 된다. 그리고 디지털증거를 선별할 때 사건 관련성을 판단하여 관련성이 없는 디지털정보는 즉시 폐기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현행 포괄수집 시 선별 절차는 수집한 디지털정보들에 대해 사건 관련성을 확정하기 안전하지 않은 시점에 이루어지는 문제가 있게 된다. 이러한 문제는 사건 관련성이 있는

자료를 구별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그래서 사건 관련성의 판단을 유보하는 방법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포괄수집은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혐의와 관련된 주요 증거가 다량으로 있을 것으로 추정된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된 디지털정보를 일괄 획득하는 방법으로 선별 절차에서 증거가 사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도 중요하다. 따라서 포괄수집의 선별 과정을 단계적으로 구분하여 실시함으로써 주요 증거의 소멸을 차단하는 방법을 생각해본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권한에 비추어 보면, 피조사인의 경영 활동상에서 생성된 자료들 중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에 포괄수집으로 획득한 디지털정보들 중에 경영 활동과 무관한 자료들은 즉시 폐기한다. 그리고 남은 경영 활동과 관련 있는 자료들을 혐의와 관련성이 있는 자료와 사후 판별해야하는 자료로 구분하여 사건 관련성 판정을 일부 유보한다. 마지막으로 사건을 진행하면서 확인되는 새로운 사실과 부합하는 디지털증거를 선별하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거친 후 사건 심사단계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사건 관련성이 없는 자료들을 폐기한다. 이렇게 사건 관련성을 단계적으로 판단함으로써 면밀한 증거 가치 판단을 수행할 수 있다면, 사건 처리의 정확성이 높아지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건 관련성의 반복적인 판단 과정은 앞에서 제안한 원격 선별 프레임워크와 결합한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디지털증거 처리의 투명성도 보장할 수 있다.

제6장 결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현대 문명이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그 변화를 가장 먼저 체감하고 변화를 이끌어가는 기업을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 활동을 펼쳐야한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디지털포렌식 전문가로 구성된 조직을 신설하여 기업의 법 위반 행위를 밝히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

기업의 법 위반 행위를 조사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조사한 사실을 기초로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 처분까지 부과하는 ‘조사 법적’ 기관으로서 조사의 절차와 과정은 엄정해야할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환경에서 디지털포렌식은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 디지털포렌식을 이용한 조사로 기업의 경영 활동상에서 생산된 디지털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은 투명해야하고, 수집한 자료의 관리와 피조사인의 참여권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디지털포렌식 기술을 활용하여 디지털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포괄수집의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첫째, 피조사인들에게 출석 선별을 유일한 선별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포괄 수집의 선별단계로 인해 피조사인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이를 역이용할 수도 있는 문제점들이 있다.

둘째,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한 증거에 대한 증거 능력은 사건 조사의 마무리단계에서 명확하게 결정지을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포괄수집에 의한 선별이 조기에 이루어짐에 따라 주요 증거들이 사장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셋째, 포괄수집으로 인해 획득한 디지털정보들에는 사건과는 전혀 무관하지만 피조사인 또는 피조사인의 소속 임직원들의 법익을 침해할 수 있는 자료들이 포함될 수 있어, 이러한 자료의 접근권

한을 소유권자에게도 부여할 필요성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현행 공정거래위원회의 디지털증거 수집을 위한 포괄수집 방법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원격 선별 프레임워크를 도입하여 피조사인에게 선별 참여 방법을 확대하고, 포괄수집 시 획득한 자료에 포함된 피조사인 또는 피조사인의 소속 임직원들이 사적 자료 또는 사건과 무관한 자료에 대한 열람을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디지털증거 선별 시 사건 관련성을 확정적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단계적으로 판단하여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주요 증거들이 누락될 수 있는 문제점을 예방하는 방법을 고민하였다.

본 논문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는 피조사인들에게 방어권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더욱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피조사인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절차의 개선을 고민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다만, 원격 선별 프레임워크의 경우 선별 과정을 전부 공개할 경우 피조사인에게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사건 조사 중에 노출될 수 있는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해야할 필요가 있다. 또한, 디지털증거 접근제한권한을 피조사인에게 부여함으로써 이를 악용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1. 단행본

김형배, 공정거래법의 이론과 실체, 도서출판 삼일, 2019
노명선·백명훈·방효근 디지털포렌식, 고시계사 2017년
공정거래위원회 30년사, 2011,

2. 논문

강승훈, 행정조사를 위한 디지털 증거수집의 적법성 강화 방안: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9,
김범식, “전자(디지털)정보의 법정 증거 제출·현출 방안”, 비교형사법연구(제19권 제1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2017. 4.), 277면
배현정,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위와 기능에 관한 법적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2002년
이숙연,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 동일성·무결성 등의 증거법상 지위 및 개정 형사소송법 제313조와의 관계”, 저스티스(통권 제161호), 한국법학원

3. 판례

가. 법원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누4515 판결

대법원 2000. 4. 11. 선고 98두 568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2. 8. 선고 2012노80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4. 11. 24. 선고 2003누9000 판결

나.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2003.7.24. 선고 2001헌가25

<Abstract>

A Study on Improvement of Digital Evidence Screening Procedure

- Focused on Fair Trade Commission-

Park, Young-Min

Department of Mathematical Information Science,

Digital Forensics

The Graduate School of

Convergence Science and Techn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digital devices have become an important tool in modern civilization. All data and information are produced and distributed by digital devices, and added value is created through storage and analysis based on digital information. The amount of information produced in the cyber world is exploding beyond imagination as it has recently entere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rough the information age.

The changes are affecting the methods of investigations by

law-regulated bodies such as the prosecution, police, the National Tax Service and the Fair Trade Commission. And for the Fair Trade Commission, which investigates unfair trade practices by companies, so-called collusion, the change is more acute. All information produced by a company is digitalized electronic information, and existing document documents and work logs have long disappeared. Thus, the Fair Trade Commission's investigation has changed to focus on the investigation of digital information. However, the investigation into digital information still has the potential to have side effects that could expose the business secrets of the entity, personal privacy, etc., depending on the method, size, and procedure. In order to minimize such side effects and to strengthen the ability to investigate digital information, the Fair Trade Commission is responding organically by strengthening specialized organizations composed of experts.

Digital evidence can be understood to be valuable evidence among digital information. Screening is the most important process that should be addressed in order to prevent the possibility of side effects described above, among cycles from collecting to disposing of digital evidence. In addition, given the increasing trend in the amount and scope of data surveyed, there is a concern that comprehensive collection is likely to involve side effects, although the need for comprehensive collection is greater than for selective collection.

This study began with the Fair Trade Commission's consideration of how the comprehensive collection conducted in

the course of conducting an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to check whether there were any violations of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and the results of the study recognized the limitations of the keyword analysis methods used mainly in the analysis of digital evidence during the comprehensive collection process and the need for measures to strengthen the management of evidence and guarantee the right to participate in the investigation companies in the process of selecting digital evidence according to the relevance of the case.

Based on these limitations and needs, the Fair Trade Commission plans to improve its digital evidence collection and screening procedures.

First, we proposed a remote screening framework to expand the right of the subjects to participate.

Second, the measure was proposed to grant access to information that could harm the legal interests of the employees of the investee and its employees through comprehensive collection.

Third, phased screening of digital evidence was proposed.

This paper means that by redefining the procedures of collection and screening steps during the process of processing digital evidence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and thus proposing measures to guarantee the right of participation of the subjects, the Fair Trade Commission can strengthen the internal stability of the management of evidence data in the investigation process, and the opportunity for the suspect to participate in the process of processing evidence data is expanded.

Key words : Digital evidence, screening, Fair Trade Commission,
digital evidence capacity, digital evidence screening,
evidence investigation, comprehensive investigation,
right to participate

Student Number : 2018-28241